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68658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0. 7. 16.
판 결 선 고	2020. 9.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20. 원고에게 한 취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가. 원고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자원화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2017. 11. 7.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2. 26. B 주식회사로부터 [redacted]시 C 외 7필지 토지 23,360㎡와 위 지상의 공장 건물 1,488.80㎡(이하 위 각 토지와 공장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취득세 등 59,968,150원(= 본세 59,842,500원 + 가산세 125,6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취득세 등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2. 20.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에 따른 '사업확장 등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경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22. 위 심판청구가 90일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사내이사인 D은 E이라는 사람과 함께 2018. 2. 6. 위 경정청구 시부터 2018. 2. 말경까지 피고의 사무실([redacted]시청 세무과)에 수차례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그러던 차에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었고, 그 다음 주의 어느 날에 위 E이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가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 원고의 사업소재지에는 우편물을 수령할 직원이 없기 때문에 직접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하겠다고 하므로, 그에게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를 교부하면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미처 수령증을 받지는 못했다.

따라서 위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는 위 E이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주 어느 날에 피고의 사무실에서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이 지난 2018. 8. 14.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위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날(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주의 관공서의 정규근무일은 2018. 2. 26.부터 2018. 3. 2.이다)로부터 90일 지난 2019. 7. 9.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그동안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었진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8. 6. 말경에 이르러 원고의 사내이사 D이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비로소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고 위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8. 8.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또한 2019. 4. 22. 조세심판원의 각하결정이 있은 후 90일 내에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2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행정심판의 고지의무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세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심판청구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해당 조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의 배제규정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제6항의 심판청구기간(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의 청구기간이 적용될 뿐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를 교부하였다는 위 E이 원고로부터 그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 받았다는 점과 피고 주장의 2018. 2. 26.부터 2018. 3. 2.까지의 어느 날 또는 그 이후의 날짜라고 하더라도 2018. 8. 14.으로부터 90일을 역산한 2018. 5. 16. 이전(즉, 2018. 5. 15까지)의 어느 날에 피고가 피고의 사무실([redacted]시청 세무과)에서 위 E에게 위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조경용 및 원예용 비료(퇴비)를 생산·판매할 목적으로 2017. 11. 7. 설립되었고, 목적 사업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7. 12. 2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원고가 창업한 이후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거나 창업을 한 원고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에 대해 기존 사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원고와 F은 전혀 별개의 회사이고 영위하는 사업내용도 다르므로, 원고가 F의 사업확장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원시적으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나.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 전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제1항 제1호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중소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제4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에 대해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6항 제4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의 하나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지특법 제58조의3은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경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 등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경감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500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판결 참조).

한편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이 구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감면대상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그것이 구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과세관청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두783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1. 7.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자원화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구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조업 개시는 기존 사업체인 F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지특법에서 제58조의3 제6항 제4호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F(본점 소재기: [redacted]시 G)은 2010. 3. 12.부터 D이 1인 사내이사로, 위 D의 처인 H이 감사로 각 재직중이다. 회사 목적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자원화 사업 및 시설 공사업, 재활용 시설 일반 용역업, 각 이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로 되어 있다. F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은 2007. 7. 27. 피고와 [redacted]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8. 9. 26. 1일 5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redacted]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이를 처리(재활용 자원화)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퇴비[음식물 쓰레기에 우드 칩(톱밥)을 혼합 투입(원료 투입 비율: 음식물 쓰레기 88%, 우드 칩 12%) 후 발효와 미생물에 의한 안정화 과정을 거쳐 생산]를 생산하고 있다.

F은 2017. 2. 14. 피고에게 위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F의 대표자가 D에서 H으로 변경되었다는 신고를 하여 2017. 2. 15.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F의 대표자 명의가 변경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가(그러나 F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는 대표자인 사내이사의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8. 7. 20. 피고에게 F의 대표자를 H에서 D으로 변경하였으니 승인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바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7. 11. 7. 설립되었는데, H이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D이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고, 감사는 I이다. 원고의 회사 목적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자원화 사업 및 시설 공사업, 재활용 시설 일반 용역업, 비료 및 사료 생산, 각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과 원고는 D, H 부부가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회사의 경영성과나 경영계획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종전에 J 주식회사가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목적용 제재목 제조업'을 운영하던 공장이었는데, 원고가 2017. 12. 2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그런데 원고가 설립되기 전인 2017. 10.경 F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공장 업종 등 변경승인 신청서(을 제1호증,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사업계획서와 공장 업종 등 변경승인 신청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라고 한다)에 의하면, F은 2017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추가로 공장건물 909㎡(용도: 창고)를 증축(공사 착공예정일: 2017. 10., 공사 준공예정일: 2018. 10.)한 뒤 유기질비료(퇴비)를 생산하는 '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20209)'을 영위하는 사업계획을 세운 다음, 2017. 10.경 피고에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 등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공장업종변경 및 공장건축면적의 변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가, 원고가 2017. 11. 7. 설립되면서 위와 같은 사업계획 등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F이 취득하여 유기질비료(퇴비)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운영하려던 곳이었는데, 2017. 11.경 이후 F은 빠지고 신규 회사인 원고가 F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18.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F으로부터 공급받은 퇴비를 원료로 하여 비료를 생산하겠다는 내용의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2018. 7. 16. 피고로부터 "원고의 사업은 F에서 발효가 된 완제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비료관리법 제2조 제6호의 비료생산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비료생산업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반려)되었다.

그 후 원고는 다시 2018. 9. 20. 이 사건 부동산을 제조장으로 하여 F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퇴비를 원료로 하여 비료[음식자원화시설로부터 발효 완료된 퇴비(완제품)을 입고하여 생석회를 투입 후 저장 부숙하여 비료 포장, 원료 투입 비율: 음식물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비 98%, 생석회 2%]를 생산하는 내용의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1. 5. 이를 수리하고, 원고에게 비료생산업 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F 등으로부터 위 퇴비(완제품)를 공급받아 여기에 생석회 2%를 투입 후 저장 부숙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사업을 할 계획인데, 원고의 이러한 비료생산 사업은 F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퇴비(완제품)에 생석회 2%를 투입한 후 저장 부숙하여 포장하는 공정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고, F이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위하려던 퇴비(완제품) 제품과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와 F의 사업 목적도, 원고에게 '비료 및 사료 생산'이 추가되어 있을 뿐, 나머지 사업 목적은 동일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F의 생산품이나 공정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F의 사업목적 달성 내지 확장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라) 원고는, 원고의 사업이 F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원고와 F 간에 단순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주(H, K, L, I)와 F의 주주(D 100%)가 완전히 다르고, 임원 구성도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F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원고와 F의 법인격이 부인될 정도의 동일 회사인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F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 사건에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할 것이 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관련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② 법 제50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에 따른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광업

2. 제조업

24.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끝.